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[별지 제18호서식] < 개정 2016.01.01>

신고번호: B18-150874

발급번호: B18-150874-006

출력일자: 2019-02-11

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

1.회사 명 : 엠에스웨어(주)

(사업자등록번호: 113-81-96801)

2.대표자 : 김민수

3.소 재 지 : (153-803)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(가산동,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 센터 18층에이1801호외)

4.매출액:84.04

억워 (소프트웨어분야 매출액 : 84.04 억위)

5. 상시종업원수 : 83

명 (소프트웨어기술자 : 74

명)

6. 신고일자 : 2018-04-06

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

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

7.사업분야 :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

8.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: 없음

※2017년 12월 결산 기준

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 음을 확인합니다.

2018 년 04 월 16 일

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



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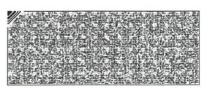
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제1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「소프 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7호 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변경 신고 를 하여야 하며,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.

210m m X297m m [백상지 80g/m²]

원본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이오니 공공SW 입찰 등 제출시 새로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(SW 산업정보종합시스템(http://www.swit.or.kr)의 '증명서위변조 확인' 메뉴에서 열람가능)







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유의사항

1.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한 "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"에 의해 기재되는 금액이며, 대기업의 공공사업의 입찰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사항입니다.

대기업은 전사업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8천억 이상이면 80억, 8천억 미만이면 40억이며 중소기업은 "없음"입니다.

대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구분하고 있으나, 독립성 기준 등 수행기관에서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사항이 있습니다. 따라서, 신고기업은 대 중소기업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만약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공공사업입찰참여금액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행기관에 정정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사실과 상이한 신고확인서를 입찰 등에 사용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,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.소프트웨어사업자 변경신고 안내

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는 관련규정에 의해 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따라서, 매년 결산 완료된 매출액 및 상시종업원수 또한 신고하셔야 하며, 이 자료를 근거로 공공사업 입찰참여금액을 갱신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변경신고하지 않은 신고확인서로 입찰 참여 시 입찰서류 미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,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



